

광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2308(본소), 2021가합52315(반소) 판결
[약정금 ·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청구의 반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21025(본소), 2022나21032(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230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평트너스 담당변호사 황용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민정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837,65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6.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587,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32,85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8,556,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4. 6. 01:50경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D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E를 충격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사고지점 횡단보도에서 선행사고로 쓰러진 E를 돌보던 E의 아내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인 34,708,04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G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의 판정을 구하는 조정결정을 청구하였다.

마. 위 심의위원회는 2014. 10. 20. 비가 내리는 밤에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보호자를 도로에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더 중대하다는 이유로 원고 차량의 과실 30%, 피고 차량의 과실 70%, 심의결정금액 24,295,628원(= 34,708,040원 × 0.7)으로 정하여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불복하지 않아 위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측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2446호)은 2018. 5. 3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9234호)은 2019. 3. 29.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19다226432호)도 2019. 7. 25.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¹⁾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사. 원고는 2013. 7. 2.부터 2020. 1. 21.까지 피해자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판결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263,463,980원을 지급한 후, 2018. 8. 29.까지 피고로부터 148,837,650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아. 한편 피고는 2015. 3. 30.부터 2019. 8. 27.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119,459,390원을 지급한 후, 2018. 9. 21.경까지 원고로부터 35,444,640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자. 이 사건 상호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제28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 효력)

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상호협정은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한 위 상호협정의 조항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2) 사안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중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피고의 책임 비율(70%)에 대응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184,424,786원(=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 263,463,980원 × 70%)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인 148,837,650원을 공제한 35,587,13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착오 취소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결정은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쟁의 전제를 착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조정결정을 취소한다.

2) 관련 법리

민법상 화해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즉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2526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의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정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피고 차량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행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화해계약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즉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 차량이 선행사고 직후에 아무런 현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30% : 70%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청구하였다.

○ 위 심의 절차에서 피고는 선행사고 직후 피고 차량 운전자가 현장조치를 실시하였고 피고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한편,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진행된 피해자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측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참가이유로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도 선행 사고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는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답변서가 2020. 11. 2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정결정은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정결정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결정은 피고 차량이 일으킨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분쟁의 전제를 착오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조정결정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이미 지급한 구상금 148,837,650원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설령 이 사건 조정결정과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그 화해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결정의 심의대상 결정금액 34,708,040원의 70%인 24,295,628원에 한하여 미친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구상금 148,837,650원에서 위 24,295,628원을 공제한 124,542,02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2018. 8. 29.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148,837,6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조정결정이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은 앞서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48,837,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최종일 이후인 2019. 8.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어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84,014,750원(=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19,459,39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35,444,64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같은 금액의 범위에서 면책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금으로 위 84,014,7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선행사고를 일으킨 행위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금에 관하여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봄메, 판사 류봉근, 판사 김대현

1) 다만,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피해자의 상고이유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항소심 판결의 일부가 파기되고 소송종료선언이 이루어졌다.